

미국과 국내 공공도서관 연체료 정책 분석을 통한 개선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Measures through Analysis of Late Fee Policy in Public Libraries in the United States and Korea

심 효 정 (Hyojung Sim)*

송 현 경 (Hyunkyung Song)**

목 차

- | | |
|-----------------------|--------------------------|
| 1. 서론 | 5. 국내 공공도서관 연체료 정책 현황 분석 |
| 2. 선행연구 분석 | 6. 종합분석과 시사점 및 개선 방안 |
| 3. 연구방법 및 절차 | 7. 결론 및 제언 |
| 4. 미국 공공도서관 연체료 정책 현황 | |

초 록

본 연구는 미국과 국내 공공도서관의 연체 도서에 대한 연체료 정책 현황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연체료 정책에 관한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국내 사례로는 서울시 공공도서관의 연체료 현황을 분석했다. 연구 결과, 서울시 공공도서관은 운영주체 기준 14.8%, 도서관 수 기준 21.6%가 연체료 부과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미국도서관협회 및 주요 공공도서관 등은 최근 연체료 폐지 정책을 계속해서 시행하고 있다. 가장 주된 이유는 연체료를 사회적 불평등의 한 형태로 인지하게 된 때문이다. 실제로 연체료 폐지로 인하여 이용자들의 정보 접근권이 강화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함께 미국 공공도서관 경우, 연체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분실로 전환을 한 이후 분실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는 연체도서 관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연체와 분실에 대한 대응 조치를 통합할 것을 제안하고 이를 위하여 법률적 근거를 명확하게 할 것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current status of late fee policies for overdue books in public libraries in the United States and Korea and derived measures to improve the late fee policy in public libraries in Korea.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the current status of late fee policies in public libraries in Seoul, Korea. The results indicated that 14.8% of public library operators and 21.6% of public libraries in Seoul had late fee policies. In the US, the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and major public libraries were found to have recently eliminated late fees. The main justification for this policy change was their recognition of late fees as a form of social inequality. In fact, this study confirmed that the elimination of late fees led to users' increased access to information. This study also found that public libraries in the US turned books not returned after a certain period into lost items and imposed fines for lost items. In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ed integrating measures for late fees and lost items to manage non-returned books and clarifying the legal basis for such measures.

키워드: 공공도서관, 연체료, 대출서비스, 대출규정, 사회적 불평등

Public Library, Late Fee, Lending Service, Lending Regulation, Social Inequality

* 대전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shj23@daejin.ac.kr / ISNI 0000 0004 5932 7729) (제1저자)

** 명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겸임교수(hsong01@mju.ac.kr / ISNI 0000 0005 0806 5623) (교신저자)

논문접수일자: 2024년 7월 26일 최초심사일자: 2024년 8월 5일 게재확정일자: 2024년 8월 13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8(3): 145-168, 2024. <http://dx.doi.org/10.4275/KSLIS.2024.58.3.145>

© Copyright © 2024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1. 서론

공공도서관은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도서관의 여러 역할, 즉 정보이용과 교양습득, 학습활동, 조사연구, 평생학습, 독서문화진흥 등의 역할 가운데에서도 책이나 자료의 열람이나 대출 등으로 구성되는 정보이용 제공은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역할이다. 근래에는 대출을 통한 정보이용 서비스로 책이나 자료 이용 가능성을 크게 확장했다.

책 대출 서비스에 있어 주요하게 제기되는 이슈가 있다. 대출한 도서를 늦게 반납하거나 아예 반납하지 않는 도서 연체다. 도서 연체는 그 책을 이용하려는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함을 초래하고, 공공의 자산인 도서관 책을 개인이 사사로운 취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는 점, 장기 미반납으로 인한 장서관리가 어려운 점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에 도서관마다 도서 연체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책 반납일을 미리 알리는 문자 서비스 등도 그 일환이다. 책 반납일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단순히 잊어버렸기 때문인지, 도서를 분실한 것인지, 거주지 이전으로 도서관을 찾기 어려운 때문인지 등 여러 사유가 있겠지만 도서관으로서 그 사유를 충분히 듣거나 알지 못한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 공공도서관은 도서 연체에 대해서는 범칙금 성격의 연체료를 부과하거나 일정 기간 대출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도서 연체에 대해서는 아직 국내외적으로 크게 주목하지 않고 가끔 신문기사 등을 통해 몇몇 사례가 소개되는 정도다. 그런데 최근 미

국 뉴욕주 등 여러 지역이나 캐나다 등에서 도서 연체에 따른 연체료를 없애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연체료 이슈가 다시 부각되었다.

국내는 서울시 소재 공공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모두 213개관(2024년 7월 현재)을 조사한 결과 공공도서관 중 연체료를 받는 곳은 서울시교육청 22개관, 성동구 7개관, 동대문구 11개관, 마포구 6개관 등 모두 46개관으로 전체의 약 22%에 해당하는 공공도서관이 연체료 부과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조치도 무조건 연체료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라, 도서 연체에 따른 벌칙으로 대출 정지가 원칙이나 대출 제한 조치에 대해 이용자가 이러한 조치 대신 연체료를 납부함으로써 곧바로 다시 책을 대출할 수 있는 자격을 회복하려고 할 때 선택하도록 하는 경우로 나타났다(이용훈, 2023b).

국내는 연체료를 부과하기보다는 연체한 일수만큼 책의 대출을 제한하는 형태로 대부분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연체 도서 회수를 위한 반납 독촉에 필요한 행정력과 회수 과정에서 불거지는 각종 갈등과 민원, 회수가 불가능한 도서에 대한 사후 책임 문제 등으로 도서관 현장은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미국 도서관들은 이용자에게 연체료를 부과하는 일이 사회적 불평등에 해당한다는 관점에서 연체료 부과 조치를 전면 폐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변화를 고려할 때 이제 우리나라 도서관들도 대출도서 미반납에 대한 연체료 부과를 포함한 다각적 대응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도서관, 그 중에서도 공공도서관의 연체료에 대한 국내 연구가 활발하지 않은

현 상황에서 미국과 우리나라 서울시 공공도서관의 연체료 정책 현황 분석과 시사점 도출을 통해 국내 도서관에서의 연체료 정책과 관련해 논의할 부분을 공론화하고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분석

공공도서관 연체료에 관한 연구로는 먼저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2009)의 “공공도서관 대출연체 방지 및 회수율 향상 방안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도서관 건립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그에 따라 전체 대출 건수는 증가했지만 분실이나 회수불능 등 대출에 따른 사고도 증가함을 언급했다. 이로 인해 지역 내 도서관 자원 공유와 공동 활용 서비스에도 도서관 사이 또는 다른 도서관 이용자와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대출 업무 실무자들에게 심적 부담이 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도서관간 상호대차나 대출 협력을 촉진하고 대출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서 문제를 명확히 규정하고 처리 절차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강영구(2008)는 “국내 대학도서관 대출 규정에 관한 조사-연체 규정을 중심으로”에서 연체료 징수를 중단한 대학이 조금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연체료 징수 금액에 있어서는 소폭 상향 조정되는 경향을 보였으나 대출 중지는 완화하는 대학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언급하면서 이용자에게 대한 규제 정책의 기본적인 관점과 틀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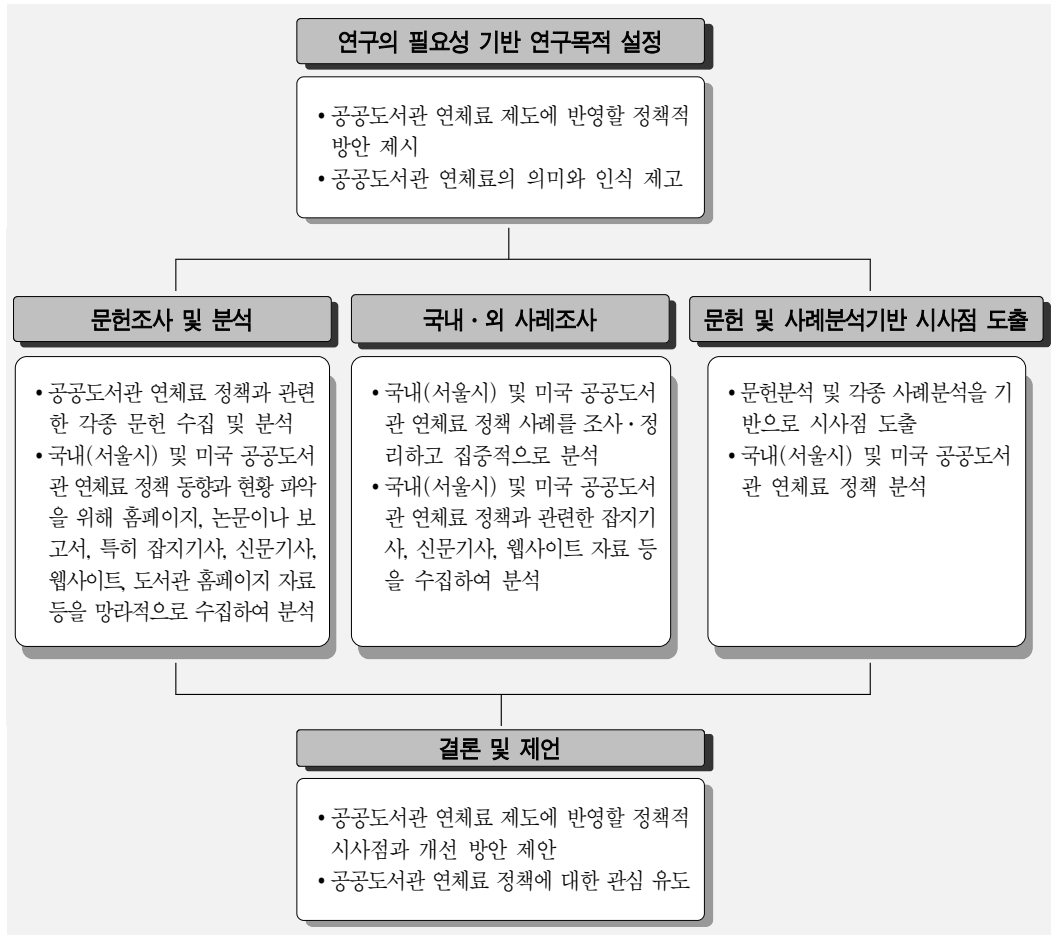
윤희운(2020)은 “전국 공공도서관 대출규정 조사 연구”에서 전국 공공도서관 대출 규정 중

회원자격과 대출권수, 대출기간, 예약과 갱신, 재대출, 대출 연체에 대한 제재 등을 권역별로 비교·분석하고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현황 분석에서는 국내의 경우 연체일수만큼 대출을 제한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연체일수에 연체 책 권수를 곱한 기간 동안 대출을 중지하는 가중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반면, 대다수의 선진국은 연체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제재하고 있음을 밝혔다.

선행연구 분석 결과 공공도서관 연체료에 관한 연구는 극히 적었다. 공공도서관의 기본 임무인 정보이용 서비스에 대한 이슈를 포함하고 있고 도서관 현장에서 연체도서 처리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연구가 거의 없어 관련 연구가 좀 더 세분화되어 심도 있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

3.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미국 공공도서관 연체료 정책 현황에 관한 문헌들을 총체적으로 수집해 분석하는 문헌조사 및 분석 방법을 택했다. 미국 공공도서관 연체료 정책 현황은 관련 논문이나 보고서가 거의 없어 각종 잡지기사, 웹사이트의 자료 등을 총체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국내 공공도서관 연체료 정책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서울시 공공도서관 홈페이지 게시 내용을 중심으로 조사·분석하였다. 이후 조사·분석한 문헌 연구 등의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분석 및 시사점을 도출하고 국내 공공도서관의 연체료 정책 방향 모색에 참고 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그림 1〉 참조).



〈그림 1〉 연구 절차 및 내용

4. 미국 공공도서관 연체료 정책 현황

4.1 미국 공공도서관 연체료 정책 동향

미국도서관협회(ALA)는 오래 전부터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벌금(fines)을 부과하는 것이 사회적 불평등을 강화하기 때문에 이를 폐지해 도서관 자료에 접근하는데 장애가 되는 장벽을

제거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2019년 1월 28일에는 '사회적 불평등의 한 형태인 금전적 도서관 벌금에 대한 결의문(Resolution on Monetary Library Fines as a Form of Social Inequity)'을 채택했다.

결의문은 1. 금전적인 도서관 벌금 부과가 도서관 및 정보서비스 제공에 장벽을 만든다는 주장, 2. 도서관 이용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관행을 면밀히 조사하고 벌금을 없애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촉구하는 주장, 3. 도서관에 대한 자금 지원을 강화하여 필요한 수입원으로 금전적 벌금에 의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 4. 벌금 폐지에 관심이 있는 도서관을 위한 전략 및 요령을 포함한 정보자원 개발을 위한 실무그룹을 구성하고 2019년 연례회의에서 시의회에 보고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미국에서는 대출한 도서를 제때 반납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시키기 위해 ‘대출도서 반납 주간(Return Borrowed Books Week)’을 기획해 실행하고 있다. 2023년은 3월 5일-11일까지, 2024년에는 3월 3일-9일까지, 2025년은 3월 2일-8일까지의 기간을 설정해 추진한다. 이 기간 동안 시민들은 해시태그를 통해 대출도서 반납 캠페인에 참여한다(Days of the year, 2024).

미국도서관협회를 중심으로 이러한 노력을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사회적으로 각종 형태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그런 중에 도서관 서비스도 영향을 받고 있음을 확인한 도서관들은 이러한 시대일수록 누구나 차별과 제약 없이 도서관 자원과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공공도서관의 사명을 다시금 확인하면서, 이러한 도서관 사명 수행에 연체료 부과가 분명한 제약이 된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연체료를 포함한 여러 유형의 제약에 반대하고 이를 제거하고자 도서관들이 연대해서 함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최근 몇 년 이래 도서관에서의 연체료 부과 조치 폐지가 미국 도서관계에서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로 언급되고 있다(이용훈, 2023a).

라이브리리 저널(Library Journal)의 2017년, 2022년 조사도 주목해 볼만하다. 2017년 4월 디슨과 길리스(Jennifer A. Dixon, Steven A. Gillis)가 조사한 공공도서관 사서 454명의 응답 결과에 의하면 연체 수수료를 징수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도서관 예산에서 수백 달러에 해당하는 직원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일부 도서관은 벌금을 부과하기 위해 들이는 노력이 부과되는 소액의 벌금에 비해 더 많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사서의 약 3분의 1이 이 관행을 완전히 폐지하는 데 찬성했다. 다만 이로 인한 예산 감소 우려를 나타냈다. 연체료를 부과하지 않는 대다수의 도서관은 벌금과 수수료가 도서관 수입원의 일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조치가 서비스 제공의 장벽이 된다고 언급한다. 또한 벌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은 직원의 스트레스 수준을 낮출 뿐 아니라 도서관이 지역사회에서 좋은 이미지를 얻는데 도움이 된다고도 말한다. 벌금 때문에 도서관에 가지 못했던 일부 이용자가 다시 도서관을 이용하려 오는 것을 발견했다고도 주장했다.

연체된 벌금을 없애는 데 따른 수입 손실을 상쇄하기 위해 일부 도서관은 대출데스크에 자발적인 기부금을 모으는 방향을 제시했다. 스티븐 A. 길리스(Steven A. Gillis) 오렌지비치 공공도서관 관장은 많은 도서관 관리자들은 벌금이 이용자, 특히 저소득 가정의 경우 도서관 이용에 장벽이 되고, 도서관 직원들의 시간을 낭비하며, 도서관의 사명과 원칙에 반하고, 적대적인 관계를 설정하거나, 자동 갱신과 같은 서비스의 구현을 방해한다고 언급했다. 예산이 감소하고 비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도서관이

수익원을 제거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의 물음에 있어서는 징수된 벌금이 전체 예산의 1% 미만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려할 여지가 있다고 응답했다.

2022년 9월 뉴저지 주 노스 브런즈윅(North Brunswick) 공공도서관의 청소년 및 미디어 사서인 거버(Andrew Gerber)가 작성한 자료에 의하면 2022년 5월 26일부터 7월 1일까지 미국 공공도서관 직원을 대상으로 연체료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총 320건이 회수되었다. 설문조사 응답에서 많은 공공도서관은 일부 수수료, 특히 연체 벌금을 줄이고 없애는 것이 가치 있고 심지어 수익을 넘어서는 방식으로 도서관에 이익이 된다는 점을 언급했다.

2017년 조사와 비교했을 때, 미국 공공도서관 중 연체된 벌금을 부과하는 도서관의 비율은 92건에서 36건으로 급감했다. 일부 도서관에서는 연체료를 없애는 것이 선택 사항이 아니었지만, 연체료를 폐지한 도서관의 응답자들은 이용자 만족도와 참여 증가, 직원 사기 증가를 언급했다. 일부 사람들은 벌금이 없어지면 이용자의 도서관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으며, 많은 경우 이러한 기대가 현실에서 증명된 것으로 밝혀졌다. 응답자 4분의 1(26%)은 도서관 내 대출 권수가 증가했다고 답했으나, 거의 같은 비율(25%)은 그렇지 않다고 답했으며, 나머지 49%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조사에 따르면, 새로 벌금이 면제된 도서관의 8%는 기금 모금, 대출 데스크에서 자발적인 기부금 모금, 지역 예산 요청 증가를 통해 벌금 수입 손실을 대체하거나 상쇄하려고 노력했다고 보고한다. 또 다른 기관은 영리/개인 회의실 예약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벌금을 없애

기로 선택한 응답자들은 벌금 폐지가 선의를 조장하고 이용자 서비스를 개선하고, 사회 정의를 증진하며, 사명 선언문과 지침을 준수할 수 있는 기회를 포함함을 언급했다. 샌프란시스코 공공도서관의 전략 데이터 분석가인 자히르 맘마드자다(Zahir Mammadzada)는 “연체된 벌금은 저소득층 및 소수 인종 커뮤니티에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침으로써 접근을 제한하고 불평등을 악화시키며, 이용자와 도서관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고, 직원 시간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대출 자료가 도서관 서가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을 일관성 있게 보장하지 않는다”고 언급했으며 다른 많은 응답자들도 이에 동의했다.

또한 라이브러리 커넥션(Library Connection, Inc. (LCI))의 도서관의 연체료 면제 정책 관련한 보고서(LCI's Fine-Free Policies Report)에 의하면 연체료 면제 정책 이후 알곤퀸 지역 공공도서관(Algonquin Area Public Library)은 연체 자료는 1%에서 2%로 증가했지만 대부분의 자료는 몇 주 내에 반납되었다고 보고한다. 데이턴메트로도서관(Dayton Metro Library)은 연체료가 폐지된 지 6개월 후 연체된 자료가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전년도보다 더 많은 자료가 반납되었다는 점을 언급했다. 엘라 지역 공공도서관(Ela Area Public Library)은 반납 기일이 일정하게 유지됐음을, 글리슨공공도서관(Gleason Public Library)은 이용자들의 반납 기간에 별 차이가 없었음을, 밀턴공공도서관(Milton Public Library)은 더 많은 이용자가 제때 책을 반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하이플레인스 도서관 지구(High Plains Library District)는 DVD를 제외한 모든 자료에 대한

연체료를 폐지한 6개월 후 자료의 95%가 도서 대출 마감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반납됐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책 변경으로 인해 도서 반납을 기다릴 때 “이용자의 실망”이 증가하는지도 평가했는데 증가를 발견하지 못했고 정책 변경이 “다른 도서관 이용자의 경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산라파엘공공도서관(San Rafael Public Library)은 “연체료 폐지 이후로 이용자들이 더이상 청소년 자료 반납을 늦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기도 했다.

도서관의 벌금 폐지로 인한 재정적 영향에 대해 벌금이 전체 도서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미미하다는 점, 벌금을 징수하는데 드는 비용이 벌금보다 많다는 점(신용카드 기계, 임대한 잔돈 계산기를 없애으로써 비용 절감 효과), 원하는 만큼 자유롭게 지불하라는 크래긴 기념도서관(Cragin Memorial Library)의 기부금 모으기 정책 실시, 뉴욕공공도서관과 같이 민간단체의 지원 요청 등을 활용할 수 있음을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4.2 주요 미국 공공도서관의 사례

4.2.1 뉴욕공공도서관(New York Public Library)

뉴욕공공도서관은 연체료가 시민의 도서관 접근을 어렵게 만든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2021년 10월 5일 연체료를 폐지했다(정시행, 2023). 이후 뉴욕공공도서관은 반납 기한이 지난 자료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지 않으며 모든 도서관 카드 소지자에게는 분실된 자료에 대한 교체 비용을 포함하여 연체료 또는 벌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이런 정책을 채택한 이유는 모든 도서관 이용자를 위한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만들고 도서관 자원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변화라고 언급했다.

연체료는 두 종류가 있다. 도서관 장서를 돌려주지 않아서 발행하는 연체료(late fee)와 도서관 책(아이템)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망가뜨렸을 때 발생하는 변상금(replacement fee)이다.

미국도서관 아동사서(2021)가 언급한 내용에 따르면 도서관 벌금은 사용자가 도서관에 발길을 끊게 되는 첫 번째 이유다. 이에 도서관 사용이 제한된 이용자 경우도 온라인 서비스는 여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제시했다.

4.2.2 로스앤젤레스공공도서관(Los Angeles Public Library)

로스앤젤레스공공도서관은 100년 넘게 유지해온 연체료 징수를 2020년 봄부터 폐지했다. 3년 전 도서관은 기한이 지난 자료를 가지고 있는 이용자에게 사면을 단행해 모두 64,633건의 자료가 반환된 경험이 있다. 사면 기간 동안 13,700명에 달하는 이용자가 다시 자료를 대출할 수 있게 되었다. 연체료를 없애 이용자들이 정보에 대한 열린 접근을 돕고, 사서와 이용자와의 마찰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Zahniser, 2019).

현재 도서관 홈페이지 게시물에 따르면 대부분의 도서관 자료는 3주간 대출할 수 있다. 다만 대출한 자료를 반납하지 않으면 이용자 계정이 추심회사(Unique National Collections)로 넘어갈 수 있다고 한다. 또한 분실 또는 파손된 물품에 대한 수수료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 중 로스앤젤레스카운티공공도서관(Los Angeles County Library)은 2021년 8월 10일부터 연체료를 폐지했다. 행정 벌금이나 수수료 부과가 저소득 가정에 재정적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서였다. 로스앤젤레스카운티공공도서관(Los Angeles County Library)은 “위대한 독서의 길(Great Read Away)”이라는 제도를 통해 21세 이하의 도서관 카드 소지자는 책을 읽음으로써 생기는 시간당 5달러의 가치를 분실 또는 훼손한 도서에 부과된 수수료 등 모든 수수료 삭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2.3 시카고공공도서관(Chicago Public Library)

2019년 시카고공공도서관들이 연체료를 없앤 이후 반납률이 240% 이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Rho, 2019). 시카고공공도서관은 더 이상 대부분 자료에 대해 연체료를 받지 않으며 아무도 그 자료를 요청하지 않는 한 자료를 최대 대출기간의 15배 기간 동안 자동으로 갱신한다.

시카고공공도서관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을 참고하면 반납하지 않은 자료는 7일 이후에 분실로 표시된다. 이때 교체 비용에 대한 수수료가 개인 계정에 추가되며 분실된 자료에 대한 교체 비용은 자료를 반환하게 되면 자동으로 삭제된다. 다만 계정에 미결제 잔액이 3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자료를 갱신하거나 추가 자료를 확인할 수 없게 하고 있다.

시카고공공도서관이 연체료를 없앤 이유는 도서관 서비스가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오히려 자료를 이용할 수 없는 불평등한 상황 때문이라고 언급했다(Chicago Public Library, 2019).

4.2.4 필라델피아공공도서관(Free Library of Philadelphia)

필라델피아공공도서관 이사들은 2020년 봄부터 기한이 지난 도서 및 기타 자료에 대한 벌금을 없애는 조치를 시행했다. 이와 같은 정책을 마련한 것은 다른 도서관들과 마찬가지로 도서관이 누구나 완전하게 접근 가능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다. 또한 도서관을 방문하는 이용자와 카드 소지자를 증가시키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기도 하다. 도서관은 일부 이용자가 연체된 벌금을 갚을 여유가 없어 도서관에 오는 것을 기피했다고 언급했다(Moselle, 2019).

연체료를 부과하지 않는 정책을 펼치고는 있지만 자료가 30일 이상 연체되면 분실된 것으로 간주하고 비용을 청구한다. 분실된 자료 가격이 5달러 이상이 되면 자료를 반환하거나 교체 또는 손실 비용을 지불할 때까지 자료를 이용할 수 없다. 이용자는 분실되거나 손상된 자료의 비용을 부담하거나 사본으로 대체할 수 있다. 벌금을 없앤 많은 도서관은 실제적으로 기한이 지난 자료의 반환 비율이 크게 증가했음이 확인되었다(Fine Free Library, 2024).

4.2.5 휴스턴공공도서관(Houston Public Library)

휴스턴공공도서관 홈페이지 게시글에 따르면 휴스턴 공공도서관은 2023년 1월 11일부터 도서 연체료를 폐지했다. 또한 2023년 1월 17일부터 2월 18일까지는 사면 기간으로 지정해 자료의 분실, 훼손도서의 수수료도 받지 않았다. 사면 기간이 종료된 후 30일이 지나도 반납하지 않은 경우는 수수료가 발생한다. 연구에 따르면 연체료 폐지 이후 도서관을 다시 이용

하는 사람이 늘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연체료가 도서관 이용에 분명한 장벽으로 작용했음을 밝혔다. 특히 벌금 부과자의 27%가 청소년이라는 점은 연체료 폐지가 청소년들에게 더 큰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다 (Houston Public library, 2023).

4.3 기타

다음은 위에서 언급한 도서관 사례 외 신문 기사 및 인터넷 기사에 언급된 도서관등을 중심으로 조사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4.3.1 시애틀공공도서관

한국일보(2022)가 조사한 시애틀공공도서관(SPL)은 지난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기 직전인 2020년 1월부터 도서관 연체료 부과를 공식적으로 폐지하고 대신 31일 이내 미반납 이용객에 대해 반납할 때까지 대출을 정지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도서관에 따르면 '연체료 폐지' 조치 실시 이후 도서 연체를 이유로 도서관 계좌가 정지된 비율은 10%에서 5%로 감소했다. 장기 연체되거나 분실되는 경우도 약 38% 감소했다. 또한 2022년에는 도서관 평균 반납 기일은 벌금이 부과될 당시와 비슷한 수준인 평균 6일 이내로 나타났다. 전체 대출 건수 가운데 평균 연체비율은 7%로 연체료를 면제한 경우와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책을 분실하거나 손상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비용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 앞서 시애틀시 유권자들은 지난 2019년 도서관 이용객들의 연체료 부담을 완화하는데 따른 비용을 포함한 2020년부터 2026년까지 7

년 동안 2억1,900만달러에 달하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도서관 징세안'을 주민투표에 부쳐 통과시켰다. 당시 시애틀공공도서관은 미국 내 여러 도시 도서관이 연체료 폐지 정책 시행 이후 오히려 대출자가 증가하고 연체율이 감소했다는 보고가 잇따르자 폐지를 고려했다.

4.3.2 샌디에고공공도서관

샌디에고공공도서관은 2018년 1월부터 연체료를 폐지했다. 샌디에고시는 2018년 4월 도서관 연체료 70만달러를 거둬들이기 위해 거의 100만달러 가까이 지불하고 있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연체료로 인해 도서관 서비스를 꺼리는 시민들이 많아져 연체료를 없애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시립도서관은 연체료 미납으로 대출이 불가한 시민이 도서관 카드 소지자의 40%에 달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LA 중앙일보, 2018).

샌디에고공공도서관 홈페이지 게시 내용에 의하면 반납 기한 7일을 넘기면 반환 또는 갱신을 알리는 알림을 보내고, 14일이 지나면 또 알림을 보내며, 30일이 지나면 마지막 알림을 보내고, 60일이 지나면 분실된 자료로 간주하여 분실된 자료에 대한 청구서를 우편 발송하고 자료 대출을 금지한다. 이런 절차를 거쳐 고지 후 2개월 이내에 자료를 반납하면 청구는 면제한다. 90일이 지나면 도서관에서는 최종 청구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이용자는 30일 이내에 청구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120일 연체 시에 해당 내용이 재무관 연체 계정 부서로 넘어간다.

4.3.3 샌프란시스코공공도서관

샌프란시스코공공도서관 홈페이지 게시글에

따르면 2019년 9월 16일에 연체료를 폐지했다. 연체료 폐지를 결정한 것은 시민들이 공공도서관을 자유롭게 평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함으로써 지식과 학습, 커뮤니티, 독서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한편, 자료가 3일이나 10일, 21일 연체되면 이메일, 전화 또는 우편으로 통지를 보낸다. 30일 연체되면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청구서를 보낸다. 총 대출 금액이 50달러를 초과하면 해당 계정은 대출, 갹신 등이 차단되며 이용자는 분실 또는 손상된 품목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벌금은 1974년에 폐지했다. 샌프란시스코공공도서관은 2019년 1월 '벌금 폐지 보고서'를 발행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출자료 연체에 따른 벌금을 없애면 자료 및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접근성 증가, 연체 벌금의 불공평한 영향 감소, 도서관과의 후원자 관계 개선, 도서관 직원의 근무 시간 최적화와 효율성 향상 등의 긍정적인 결과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보고서에는 도서관 직원은 하루 평균 대면으로 200여건의 벌금 부과와 관련한 업무를 하며 연간 1,155-3,464시간을 소비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샌프란시스코공공도서관 홈페이지에서는 북미 지역에서 벌금을 면제하고 있는 도서관과 연체료를 없애기 위해 도서관들의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지도 등도 링크로 제공하고 있어 연체료 폐지 정책 시행을 준비하는 도서관들에 도움을 주고 있다(ULC, 2024).

4.3.4 버뱅크공공도서관

레이첼 크레이머 버셀(Rachel Kramer Bussel, 2021)이 언급한 글에 따르면 미국 전역의 도서관

들이 연체료를 없애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남서부 버뱅크공공도서관(Burbank Public Library)은 2021년 7월 1일 연체 도서에 대한 연체료 부과 제도를 없앴다. 이번 제도 변화에 대해 버뱅크공공도서관은 자관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조치는 접근의 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연체 자료에 대한 벌금은 작은 부담으로 보일 수 있지만,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장벽이 될 수 있다. 너무 많은 사람이 벌금을 내지 못하거나 벌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도서관 이용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또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벌금은 자료를 제때 반납하는 데에도 효과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벌금을 없앤 도서관에서는 오랫동안 기한이 지난 자료가 다시 반납되고 몇 년 동안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던 이용자들이 다시 방문하기 시작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분실 또는 파손된 대출 자료에 대해서는 여전히 벌금 또는 수수료 형태로 비용이 부과된다.

4.3.5 솔트레이크시티공공도서관(Salt Lake City Public Library)

솔트레이크시티공공도서관 홈페이지 게시글에 의하면 솔트레이크시티공공도서관은 2017년 7월 1일에 연체료를 폐지했다. 연체된 기간이 4주를 넘어가면 비용이 청구된다. 또한 대부분 도서관이 그렇듯 손상된 품목이나 처리 수수료와 비용에 대한 부분은 청구된다. 이사회에서는 벌금은 서비스에 대한 불공평한 장벽이므로 도서관의 공평한 서비스, 조기 문맹 퇴치 촉진, 정보 및 서비스에 대한 장벽 없는 접근이라는 핵심 가치에 위배되기 때문에 연체 벌금을 없앴다고 표명했다.

5. 국내 공공도서관 연체료 정책 현황 분석

본 연구는 미국 공공도서관의 연체료 정책 현황과 함께 국내 공공도서관 연체료 정책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국내 공공도서관 연체료 정책 현황은 연구의 현실적인 이유로 서울시 공공도서관(지자체,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을 중심으로 조사·분석하였다. 그

내용은 <표 1>과 같다.

우선, 대출도서 연체에 대해 대부분 일정 기간 대출을 중지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연체료를 부과하는 도서관들은 성동구립도서관, 동대문구립도서관, 마포구립도서관과 서울시교육청도서관 등 4곳으로 27곳의 운영주체 중 14.8%로 분석된다. 도서관 수를 기준으로 보면, 46개관으로 전체 213개관 중 21.6%에 해당한다.

<표 1> 서울시 공공도서관 연체료 정책 현황

순서	구분	도서관수	연체 시 조치			기타
		24년 7월 기준	연체료 부과	대출 중지	주요 내용	
1	서울특별시	1	X	○	대출권수 × 연체일수만큼 대출이 중지	
2	종로구	3	X	○	연체일수만큼 대출 정지	
3	중구	7	X	○	연체일수만큼 대출 중지(여러 권일 경우 최장 연체일수 적용)	
4	용산구	2	X	○	연체일수만큼 대출 정지	
5	성동구	7	△	○	연체일수×2배만큼 대출 정지, 디지털정보실 이용 제한 ※ 7개 구립도서관 및 작은 도서관 중 1곳에서 연체하여도 전체 도서관에서 불이익을 받게 됨/ 대출금지 해제 연체료 납부: 반납 당일 도서 1권당 연체일수 ×100원 대출금지기간 중 도서 1권당 잔여 대출금지일수 ×50원 ※ 작은도서관 자료는 연체료 납부 불가	
6	광진구	8	X	○	연체일수만큼 대출 정지(연체 도서 중 가장 긴 연체일수 적용)/ 대출자료에는 도서, 부록자료, DVD, 잡지 등이 해당 됨 / 작은도서관 경우는 [연체일수×대출 권수]만큼 대출이 불가	
7	동대문구	11	○	○	대출 정지: 연체시 연체일수만큼 대출 정지 / 연체료: 1일 1권당 100원 연체일수×연체권수×100원(2권의 책을 3일 연체한 경우 3×2×100=600원) 연체료는 최대 대출자료 시가의 50%까지만 적용 ※ 연체자료를 모두 반납한 후 대출 정지 해제를 위하여 연체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 후에는 다시 변경할 수 없음	

순서	구분	도서관수	연체 시 조치			기타
		24년 7월 기준	연체료 부과	대출 중지	주요 내용	
8	중량구	6	X	○	반납일 다음날부터 연체일수만큼 대출 정지 ※ 1권이러도 연체 시, 구립 도서관 전체에서 연체일수만큼 대출이 정지	
9	성북구	15	X	○	연체일수만큼 대출이 정지	
10	강북구	7	X	○	지연일수만큼 대출 제한 (이미 연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휴관일, 공휴일 등도 연체일수에 산정됨) / 연체시 대출 중지 대출 중지 기간=연체도서수×연체일수 연체된 도서를 무인반납함에 투입하였을 경우: 당일반납 처리됨 단, 휴관일이나 0시~07시(심야재벽) 반납은 전일 반납처리됨(연체된 도서는 휴관일이나 공휴일도 연체일수에 포함됨)	연체자관리 내용도 있음
11	도봉구	8	X	○	연체일수만큼 대출 정지	
12	노원구	8	X	○	자료의 연체일수 중 가장 기간이 긴 연체일만큼 대출 정지 장기연체시 회원자격이 상실, 노원구립도서관 이용 및 자료대출불가	
13	은평구	8	X	○	반납일을 제외하고 초과(연체)된 일수만큼 대출 정지(최대60일) / 한 도서관에서 대출이 정지되면 은평구 모든 공공도서관에서 대출 정지됨	
14	서대문구	3	X	○	반납기일로부터 연체일수만큼 대출 정지. 예) 3책 3일 연체시 3일 대출 정지 / 대출 정지시 예약자료 대출 불가	
15	마포구	6	○	○	각 자료의 연체일수의 합만큼 대출 정지 또는 연체료(현금) 부과(연체일수×권수×100원) / 한 도서관에서 대출이 정지되면 마포구 모든 구립도서관에서 대출 정지됨	
16	양천구	9	X	○	연체 자료 중 최대 연체일수만큼 대출이 정지(연체료 지불할 수 없음, 대출 정지 기간 최대 60일)	
17	강서구	8	X	○	연체: 연체권수×연체일수만큼 대출 정지 (예) 2권의 책을 3일 연체한 경우 6일간 대출 정지	
18	구로구	10	X	○	연체일수만큼 대출 정지	
19	금천구	4	X	○	도서 연체일수만큼 대출이 정지	
20	영등포구	5	X	○	연체일수만큼 대출 정지	
21	동작구	8	X	○	연체일수만큼 대출이 정지	
22	관악구	5	X	○	각 자료 연체일수의 합만큼의 기간 동안 대출이 정지. 예) 2권 2일 연체 시, 4일 정지 (2권×2일)	
23	서초구	9	X	○	연체일수만큼 대출 정지	
24	강남구	15	X	○	반납일 당일 및 연체일수만큼 대출 중지(반납기한은 반납예정일, 해당도서관 자료실 운영시간까지)	

순서	구분	도서관수			연체 시 조치		기타
		24년 7월 기준	연체료 부과	대출 중지	주요 내용		
25	송파구	12	X	○	연체일수만큼 대출할 수 없음	2곳(소나무언덕1호, 4호 도서관은 작은도서관)으로, 가락물도서관은 국가 통계에 없음	
26	강동구	6	X	○	연체한 일수만큼 대출이 정지되며, 대출 정지일은 연체도서 반납 후에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문의게시판에서 설명	
27	서울시 교육청	22	○	○	대출자료 반납 연체시 22개 도서관 대출금지 / 대출자료 반납을 연체할 경우 대출 정지 또는 연체료 납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연체료를 납부할 경우 즉시 대출 가능 / 연체료를 납부할 경우에는 1책 당 1일 100원의 연체료를 부과하되, 부담금액이 해당 자료의 시가를 초과할 수 없음 / 연체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1책 당 연체일수만큼 대출을 정지함	국민생각함에 연체차 체제 기준 완화 제안이 있었음. https://www.epeople.go.kr/idea/sen/1AE-2306-0000875/detail.npa?id	
합계		213	4곳	27곳			

각 운영주체별로 살펴보면, 성동구(7개관)의 경우 도서가 연체되면 연체일수의 2배만큼 대출을 정지하고 디지털정보실 이용이 제한된다. 7개 구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을 포함하여 1개관에서만 연체하여도 전체 도서관에서 대출 정지와 함께 디지털정보실 이용이 제한되며 대출 정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반납당일 도서 1권당 연체일수 당 100원이 연체료가 부과된다. 또한, 대출금지 기간 중 도서 1권당 잔여대출 금지일수 당 50원이 연체료에 해당한다. 다만, 작은도서관 자료의 경우는 대출 시스템이 상이해 연체료 납부가 불가하다.

동대문구(11개관)의 경우, 연체시 연체일수만큼 대출이 정지되며 연체료는 1일 1권당 100원이다. 예를 들어 2권의 책을 3일 연체한 경우 600원(3×2×100)이 연체료에 해당한다. 다만, 연체료는 최대 대출자료 시가의 50%까지만 적

용하며 대출자료를 모두 반납한 이후 대출 정지 해제를 위하여 연체료를 납부할 수 있다.

마포구(6개관)의 경우, 각 자료의 연체일수의 합만큼 대출을 정지하거나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연체일수×연체권수×100원이 연체료가 된다. 1개관에서만 연체하여도 마포구립도서관 모두에서 대출이 정지되는 시스템이다.

서울시교육청도서관(22개관, 평생학습관 포함)의 경우, 대출자료를 연체할 경우 22개 도서관에서 대출이 금지되며 연체할 경우, 대출 정지 또는 연체료 납부를 선택할 수 있다. 연체료를 납부할 경우, 즉시 대출이 가능하다. 연체료는 연체일수×연체권수×100원이며 부담금액이 해당 자료의 시가를 초과할 수 없으며, 연체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1책 당 연체일수만큼 대출을 정지한다.

서울시교육청도서관의 연체료 정책에 대해서는 2023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정책소통공간인 국민생각함에 '자료반납 연체자 제재기준, 완화해야 할까요?'라는 게시글이 올라와 있기도 하다. 연체료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도서관이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하여 올린 게시글인데 시민들은 게시글을 기반으로 온라인 설문조사에 참여하여 찬성과 반대 등 의사를 밝힐 수 있다. 게시글은 연체료 완화의 장점으로 '도서관 이용에 대한 부담이 경감되어 시민의 도서관 이용편의가 향상됨', '연체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사람도 자료 대출이 용이해짐' 등을 들고 있다. 미국 공공도서관 연체료 정책의 경우, 연체료를 폐지하는 가운데 '사회적 불평등'을 이유로 들고 있는데 서울시 교육청 도서관도 유사한 맥락에서 연체료 완화 정책을 고민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연체료를 받지 않는 공공도서관들은 연체일수만큼 대출을 정지하는 자치구들이 15곳으로 가장 많다. 27곳의 운영주체 중 55.6%에 이른다. 종로구, 용산구, 중랑구, 성북구, 도봉구, 은평구, 서대문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소속 공공도서관이 이에 해당한다. 도서관 수를 기준으로 하면 114개관으로 전체 213개관 중 53.5%에 해당한다. 이 중 성동구와 송파구, 강남구, 중랑구와 은평구 등의 경우에는 1개관에서 연체를 한다고 하더라도 자치구 내 모든 공공도서관에서 대출을 할 수 없다. 최근 동일 지자체 소속 공공도서관 경우에는 통합으로 회원을 관리하기 때문에 1개 도서관에서 연체가 발생하면 관내 다른 도서관에서도 같은 제재를 받게 된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사항을 이용자에게 안내하고 홈페이지 등에 명확하게 게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대출권수×연체일수만큼 대출을 정지하는 자치구들이 4곳이 있다. 27곳의 운영주체 중 14.8%이다. 서울시(서울도서관),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소속 공공도서관 총 21개관으로 전체 213개관 중 9.9%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2권의 도서를 3일 동안 연체한 경우 2×3일=6일 만큼 대출을 정지한다. 또한, 연체일수만큼 대출을 정지하되, 여러 권을 연체할 경우, 최장 연체일수를 적용하는 자치구들이 4곳으로 나타났다. 27곳의 운영주체 중 14.8%이다. 중구, 광진구, 노원구, 양천구 도서관이 이와 같은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도서관 수를 기준으로 하면 32개관으로 전체 213개관 중 15.0%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서울시 공공도서관 연체료 정책 현황은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다. 첫째, 서울시 전체 공공도서관의 21.6%가 연체료 부과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 연체료 정책 등 해외 연체료 정책을 참고하여 연체료 정책과 관련한 시사점과 개선방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특히, 서울시교육청도서관 경우, 온라인 정책소통공간인 '국민생각함'에 연체료 완화를 주제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는 점에서 현장 공공도서관도 연체료 정책 완화와 관련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운영주체의 차이로 인하여 한 자치구 내 연체료 정책이 상이한 도서관들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서울시교육청도서관은 서울시 내 15곳의 자치구에 분포하고 있어 15곳의 자치구의 도서관 이용자들이 이와 관련하여 혼란을 느낄 수 있다. 이에 따라 운영주체가 다르다고 할지라도 서울도서관과 자치구립도서관, 서울시

교육청도서관의 연체료 정책을 통일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이용자들이 하나의 이용증으로 가입한 공공도서관들로부터 대출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책이름서비스에 가입한 공공도서관들의 경우, 한 도서관에서 연체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이용하는 다른 도서관에서도 연체가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연체와 관련하여 이용자들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

셋째, 연체료 정책과 관련하여 이용자들이 상세히 파악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연체 정책에 대하여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다. 강북구의 경우, 구립도서관 홈페이지에 휴관일, 공휴일도 연체일 수에 산정이 되는지, 연체도서를 무인반납함에 투입하였을 경우, 연체 반납처리되는지 등 연체료 정책과 관련하여 이용자들이 궁금해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어 다른 지자체에서도 참고해볼만하다.

6. 종합분석과 시사점 및 개선 방안

6.1 종합분석

본 연구는 미국 공공도서관 및 서울시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국내 공공도서관 연체료 정책 현황을 조사하고 분석함으로써 국내 도서관들의 연체료 부과에 대하여 다각적 검토가 필요함을 제시하고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미국도서관협회를 비롯한 공공도서관들은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연체료를 부과하는 것이 빈곤과 관련한 사회적 불평등과 관계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적 이유로 대출을

하지 못하는 것은, 정보 접근은 모두에게 평등하여야 한다는 도서관의 사명과 관련하여 생각할 때, 주요하게 고민해볼 만한 내용이다. 특히, 미국도서관협회는 보다 명확하게 2019년 '사회적 불평등의 한 형태인 금전적 도서관 벌금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하여 사회적 불평등과 관련하여 도서관 벌금은 도서관 및 정보서비스 제공에 장벽을 만든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미국 내 비교적 규모가 있는 주요 도서관들은 물론, 소규모 도서관들도 연체료를 부과하지 않는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시민들의 정보 접근권을 보다 강화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다.

미국도서관협회의 '사회적 불평등의 한 형태인 금전적 도서관 벌금에 대한 결의문' 채택을 전후로 미국 공공도서관들은 연체료를 폐지하게 된다. 본 연구 분석 결과, 솔트레이크시티공공도서관은 2017년부터, 샌디에고공공도서관은 2018년부터, 샌프란시스코공공도서관은 2019년부터 연체료를 폐지했다. 로스앤젤레스공공도서관, 필라델피아공공도서관, 시애틀 공립도서관은 2020년부터 연체료를 폐지했으며 뉴욕공공도서관과 버뱅크공공도서관은 2021년부터, 휴스턴공공도서관은 2023년부터 연체료를 폐지했다. 이는 미국도서관협회의 '사회적 불평등의 한 형태인 금전적 도서관 벌금에 대한 결의문'의 문제의식에 대하여 공공도서관 현장에서도 같은 수준으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주요 공공도서관들의 연체료 폐지 사유를 보면, 뉴욕공공도서관의 경우 '연체료를 시민의 도서관 접근을 어렵게 만든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연체료를 폐지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공공도서관의 경우 연체료가 저소득 가

정에 재정적 부담이라고 판단하여 폐지했다. 시카고공공도서관 역시 연체료 폐지에 대하여 도서관 서비스가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오히려 자료를 이용할 수 없는 불평등한 상황을 초래하기 때문이라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필라델피아공공도서관은 일부 이용자가 연체된 벌금을 갚을 여유가 없어 도서관에 오는 것을 기피했다는 이유로, 휴스턴공공도서관은 연체료가 도서관 이용에 분명한 장벽으로 작용했다는 이유로 연체료를 폐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샌디에고공공도서관은 연체료로 인하여 도서관 서비스를 꺼리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연체료를 폐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샌프란시스코공공도서관은 시민들이 공공도서관을 자유롭게 평등하게 접근하기 위해서 연체료를 폐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솔트레이크시티공공도서관의 경우 이사회에서 벌금은 서비스에 대한 불공평한 장벽이라고 결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분석 결과, 본 연구 대상 공공도서관들은 구체적인 표현과 내용은 다르나 이용자 모두에게 평등하여야 할 정보 접근권이 연체료라는 재정적 부담으로 인하여 훼손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연구 대상 공공도서관들의 경우, 실제로 연체료로 인하여 정보 접근권이 약화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연체료 폐지로 인한 효과로 이용자들의 정보 접근권이 강화된 사례들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미국도서관협회는 물론, 연구 대상 공공도서관들의 문제의식이었던 연체료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이 현장에서 나타난 사례들이다. 실제로 샌디에고시립공공도서관은 연체료 미납으로 인하여 대출

이 불가능한 시민들이 도서관 카드 소지자의 40%에 달해 정보 접근권이 약화되었다고 분석할 수 있다. 반면 연체료 폐지로 인하여 이용자들의 정보 접근권이 강화된 사례도 다수 있다. 로스앤젤레스공공도서관은 연체료 폐지 3년 전에 연체된 자료를 가진 이용자에게 연체료를 폐지해줌으로써 6만여건의 자료가 반납되었고 13,000여명의 이용자들이 다시 자료를 이용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카고공공도서관의 경우, 연체료를 없앤 이후 반납률이 240% 이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휴스턴공공도서관은 연체료 폐지 이후, 도서관을 다시 이용하는 사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시애틀공공도서관의 경우 연체료 폐지 이후 도서 연체를 이유로 도서관 계좌가 정지된 비율이 10%에서 5%로 줄어든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울러 연체료 폐지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로 샌프란시스코공공도서관의 경우, 자료 및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접근성 증가, 직원들이 보다 중요한 업무에 집중할 수 있음 등을 꼽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미국도서관협회는 사전에 연체료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출한 도서를 반납시키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전역을 대상으로 대출도서 반납주간을 만들어 실행하고 있으며 시민들은 SNS 해시태그를 기반으로 대출도서 반납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연구 대상 공공도서관의 경우, 분실 또는 파손된 물품에 대한 수수료는 유지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현장 공공도서관이 연체료를 폐지하면서도 대출도서가 기한 내에 반납되지 않을 경우에 조치를 취할 수 있게 선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시

카고공공도서관은 반납하지 않은 자료는 7일 이후에 분실로 표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실에 대한 교체 비용은 자료를 반환하면 자동으로 삭제되지만 계정에 미결제 잔액이 3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자료를 갱신하거나 추가자료를 확인할 수 없게 조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필라델피아공공도서관은 자료가 30일 이상 연체되면 분실된 것으로 간주하고 비용을 청구하며 분실된 자료 가격이 5달러 이상이 되면 자료를 반환하거나 교체 또는 손실 비용을 지불할 때까지 자료를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샌디에고공공도서관은 반납 기한 60일이 지나면 분실된 자료로 간주하며 90일이 지나면 최종 청구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120일 연체 시엔 재무관 연체 계정 부서로 넘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솔트레이크시티공공도서관의 경우 연체된 기간이 4주를 넘어가면 비용이 청구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표 2>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국내 사례로 서울시 공공도서관의 연체료 정책 조사 결과를 분석하면, 서울시 전체 공공도서관의 21.6%가 연체료 부과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운영주체의 차이로 인해 한 자치구 내 연체료 정책이 상이한 도서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책이음서비스에 가입한 공공도서관들의 경우, 한 도서관에서 연체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이용하는 다른 도서관에서도 연체가 발생하기에 이용자들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연체료 정책과 관련해 이용자들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상세한 안내와 적극적 홍보가 필요하다.

6.2 시사점

본 연구는 미국 공공도서관 및 서울시 공공도서관 연체료 정책 현황을 분석하며 이를 기반으로 국내 공공도서관들의 연체료 부과에 대하여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도서관에서 연체료를 받는 이유는 대출도서관이 기한 내에 반납되지 않을 경우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할 수 있기 때문인 점도 있다. 이용자에게 공공재인 도서관 책을 사적으로 점유하지 않아야함을 인식시키고 도서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는 의미도 있다(이용훈, 2023a). 이에 연체료 폐지는 도서 반납률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연체료가 사람들에게 도서 반납에 대한 책임감을 심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며, 폐지하면 도서의 분실이나 불량 반납 등의 문제가 증가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미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바로 분실로 전환시키고 이 경우는 벌금 또는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미 우리나라 도서관들도 분실한 도서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벌금 부과 등의 절차가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연체와 분실의 경우에 대한 대응 조치를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이용자에게는 연체에 따른 벌금을 부과하지 않고 도서관에 대한 접근을 보다 용이하게 하는 한편, 도서관 입장에서는 중장기 연체를 분실로 처리해서 분실에 따른 조치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 보다 업무 절차의 간소화 내지는 효율화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분실된 도서에 대한 벌칙 조치는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대학도서관 경우 도서

〈표 2〉 미국 공공도서관 연체료 정책 관련 분석 결과

구분	뉴욕 공공도서관	로스앤젤레스 공공도서관	시카고 공공도서관	필라델피아 공공도서관	휴스턴 공공도서관	시애틀 공공도서관	샌디에고 공공도서관	샌프란시스코 공공도서관	버뱅크 공공도서관	솔트레이크시티 공공도서관
폐지 시점	2021년	2020년	2019년	2020년	2023년	2020년	2018년	2019년	2021년	2017년
직접 밝힌 폐지 이유	시민의 도서관 접근이 어렵기 때문	저소득 가정에 재정적 부담	도서관서비스가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오히려 자료를 이용할 수 없음	이용자가 연체료를 지불할 여유가 없어 도서관을 기피함	연체료는 도서관 이용에 장애	여러 도서관이 연체료 폐지 이후 대출자가 증가하며 연체율이 감소된 데에 따라 결정	연체료로 인하여 도서관 서비스를 꺼리는 시민들이 많음	시민들이 공공도서관을 자유롭고 평등하게 접근하도록 함	접근의 형평성 개선	이사회에서 벌금은 서비스에 대한 불공평한 장벽이라고 결의
직접 밝힌 폐지 효과	-	연체료 폐지로 자료 6만여 권 반납, 이용자 1만3천명 다시 이용	-	-	도서관 다시 이용하는 이용자 증가	도서관 이용자 증가로 도서관 재정정지된 비율이 10%에서 5%로 감소	-	자료 및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접근성 증가, 직원들이 보다 중요한 업무에 집중	-	-
분석 수수료	분석된 자료에 대한 교체 비용을 포함해 연체료 또는 벌금은 부과하지 않음	분석 또는 파손된 물품에 대한 수수료 유지	연체 7일 이후 분석이 되며 교체 비용에 대한 수수료가 추가된. 미결제 잔액이 30달러 초과 시 자료 갱신 혹은 추가자료 확인 불가	30일 이상 연체 시, 분석된 자료 가격 5달러 이상이면 자료 반환하거나 교체 또는 분석 비용 지불해야 가능	연체 30일이 지나면 분석, 훼손 도서의 수수료 발생	분석하거나 상시 비용 부과	연체 60일이 지나면 분석된 자료로 간주하며 청구서 발송 및 대출 금지. 90일이 지나면 최종 청구서 발송 및 30일 이내 청구 비용 지불 필요	30일 연체시, 청구서 보냄. 분석 또는 손상된 품목에 대한 비용 청구	분석 혹은 파손 자료에 대해 벌금 또는 수수료 부과	연체 4주 이후, 손상된 품목에 대한 처리 수수료 및 비용 청구

를 반납하지 않는 경우 졸업 후 필요한 증명서 발급 등을 제한하는 것을 참고해서(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21) 증명서 발급 등을 제한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6.3 개선 방안

미국과 서울시 공공도서관의 연체도서에 대한 대응 정책을 살펴본 바, 연체료 부과는 도서관의 기본 이념을 구현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일부 이용자의 도서연체에 대해 보다 실효적인 대응책 마련의 필요 또한 여전하다. 도서관의 장서 관리 측면에서도 보다 실효적 대응 방안 마련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에 우리나라 도서관에서의 연체료를 포함한 연체도서 정책의 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국가 또는 광역자치단체 단위로라도 연체도서 정책을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책이음이나 책바다 서비스로 전국 대부분 공공도서관에서 도서를 대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운영주체의 차이로 인하여 한 자치구 내에서도 연체도서에 대한 연체료 정책이 서로 다르다면 여러 도서관을 두루 이용하는 이용자는 혼란을 느낄 수 있다. 운영주체가 다르다고 할지라도 지방자치단체 소속이든 교육청 소속이든 상관없이 도서관의 연체료 정책을 통일한다면 이용자들의 도서관 이용에 불편함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둘째, 대출한 도서를 연체했을 경우 어떠한 벌칙이나 제한이 있는지에 대해 이용자들이 충

분히 자세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연체에 대한 도서관 정책을 상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홈페이지를 통한 안내와 함께 회원 가입 시 연체를 포함한 대출 정책 전반에 대한 자세한 안내문을 전달하고 설명하는 것도 필요하다. 연체도서에 대한 정책을 통일한다면 모든 도서관이 함께 홍보함으로써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사례로 언급한 서울시 강북구 구립도서관이 홈페이지에 연체에 관한 정책과 관련한 여러 사안들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게시하고 있는 것을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대출도서 연체 기간을 대폭 줄이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연체가 아닌 분실로 처리하고 분실도서에 준하는 조치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사례로 살펴본 미국 샌디에고공공도서관 경우는 연체가 발생한 60일이 지나면 분실로 간주해 분실자료에 대한 청구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자료 대출을 금지하는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최종 120일이 지나면 분실에 대한 비용 청구를 확정하고 해당 내용을 시 재무관 연체 계정 부서로 넘김으로써 도서관의 관리 사무의 부담을 경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우리나라 공공도서관들도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도서연체에 대해서는 연체료 부과나 일정 기간 대출중지 조치는 최대한 경감하고 보다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중장기 연체에 대해서는 이를 분실로 간주해서 보다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고, 그와 관련한 추가적인 조사와 연구를 해야 한다.

넷째, 현재 서울시 일부 공공도서관이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은 해당 지자체 또는 교육청의 도서관 관련 조례에 근거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동대문구는 「서울특별시 동대

문구 구입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자료반납 및 분실 등)에, 마포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대출제한), 성동구는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3조(대출제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경우는 「서울특별시립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이용 규칙」 제7조(대출자료수·대출기간 및 제재조치)에 각각 관련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만일 공공도서관들이 연체료 정책을 계속 유지하고 분실에 대한 변상이나 비용 청구를 하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상위법인 「도서관법」과 동법 시행령에 관련한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의 조례나 규칙 등의 제정과 시행에 더욱 강력한 근거가 될 수 있도록 현재 「도서관법」 제48조(이용료)와 같이 별도 조항으로 연체료와 변상에 관한 사항, 즉 “「도서관법」 제48조의2(연체료 등) ① 공공도서관은 그 이용자에게 연체료나 분실도서에 대한 변상금 등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도서관이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연체료 등의 범위는 조례로 정한다.”라는 내용 추가를 제안한다.

7. 결론 및 제언

공공도서관이 일반적으로 이용자가 대출한 책이나 자료를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않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늦게 반납하는 기간만큼 일정 기간 대출을 정지하거나 벌금인 연체료 징수라는 벌칙을 부과한다. 연체료는 정한 대출기간 내에 자료를 반납하지 않은 이용자로부터 도서관

이 징수하는 일종의 벌금이다(이용훈, 2023a). 그러나 최근 미국에서 뉴욕시나 샌프란시스코시 등 주요 도시의 공공도서관들은 연체료를 폐지하고 있다. 연체료 폐지는 도서관과 이용자 간의 관계 개선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 연체료를 없앴으로써 도서관은 이용자들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독서와 학습을 장려하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이는 도서관 이용률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지역사회의 교육 수준 향상과 문화 활동 증진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미국에서는 연체료가 일부 이용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고,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도서 이용 접근을 어렵게 함으로써 이들로부터 독서와 학습의 기회를 빼앗아, 공공도서관의 '무료 이용'과 '누구나 접근 가능'해야 한다는 주요한 이념과 정신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폐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도 「도서관법」 제2조에서 제시하고 있는 '도서관이 국민의 정보기본권 신장과 사회의 문화발전에 기여하여 지식문화 선진국을 창조'하는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도서관에 접근함에 있어 최대한 장벽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개선방안을 참고하여 도서 연체에 대해 더 과학적인 조사와 분석을 실시하고 연체료 폐지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 대출도서 연체에 대해 미국에서 확산되고 있는 연체료 부과 조치 폐지 상황을 살펴보고, 이러한 조치가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도서 연체 방지와 대응에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를 분석했다. 국내 사례로 서울시 공공도서관의 연체료 정책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이 도

서 연체를 방지하면서도 연체료 등의 조치로 인한 이용 장벽을 최대한 없애 공공도서관의 이념과 가치에 부합하는, 이용 활성화와 계층 간 불평등 해소 등의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였다.

참 고 문 헌

- 강영구 (2008). 국내 대학도서관 대출 규정에 관한 조사: 연체 규정을 중심으로. 사대도협회지, (9), 89-101.
-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21). 대학도서관 장서폐기 가이드라인 수립 연구. 대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2009). 공공도서관 대출연체 방지 및 회수를 향상 방안 연구.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 미국도서관 이동사서 (2021). 미국도서관 이동사서 이야기.
출처: <https://brunch.co.kr/@6e76b19028a4460>
- 윤희운 (2020). 전국 공공도서관 대출규정 조사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1(1), 349-372.
<http://dx.doi.org/10.16981/kliss.51.202003.349>
- 이용훈 (2023a, 6. 5.). [현장칼럼] 공공도서관 연체료 ① 미국 도서관이 '책 도둑'을 그냥 둔다고?. 도서관닷컴. 출처: <http://libns.com/View.aspx?No=2838063>
- 이용훈 (2023b, 6. 14.). [현장칼럼] 공공도서관 연체료 ② 패널티 보다 같이 느끼는 독서의 즐거움을. 도서관닷컴. 출처: <http://libns.com/View.aspx?No=2846929>
- 정시행 (2023, 4. 14.). [특파원 리포트] 미 도서관엔 연체료가 없다. 조선일보 오피니언 특파원 칼럼. 출처: https://www.chosun.com/opinion/correspondent_column/2023/04/14/IWJ3TZY6XNGDPHSQUOLYUJJCLE/
- 한국일보 (2022, 4. 7.). 도서관 책 연체가 줄었다... 시애틀 공립도서관 연체료 없앴더니 오히려 감소. 출처: <http://m.koreatimes.com/article/20220407/1410079>
- LA중앙일보 (2018, 7. 4.). 시립도서관 연체료 폐지...효율성 강화 및 이용 장려. 출처: <https://news.koreadaily.com/2018/07/03/society/generalsociety/6345678.html>
- Rho, K. (2019, 11. 5). 시카고공립도서관, 연체료 없앤 후 반납률 외려 상승. LA중앙일보. 출처: <https://news.koreadaily.com/2019/11/04/society/international/7747192.html>
- ALA (2019). Resolution on monetary library fines as a form of social inequity. Available: <https://www.ala.org/sites/default/files/aboutala/content/Resolution%20on%20Monetary%20Library%20Fines%20as%20a%20Form%20of%20Social%20Inequity-FINAL.pdf>

- Bussel, R. K. (2021, July 30). Libraries across the United States are ending fines for overdue books. Available:
<https://www.forbes.com/sites/rachelkramerbussel/2021/07/30/libraries-across-the-united-states-are-ending-fines-for-overdue-books/?sh=556173c3479b>
- Carrico, L. (2023, November 1). Houston Public Library is a 'fine free' system... Houston Public library blog. Available: <https://houstonlibrary.org/blogs/hplnews/Fine-Free>
- Chicago Public Library (2019). Fines don't fly: CPL eliminates most overdue fines. Available:
<https://www.chipublib.org/news/fines-dont-fly-cpl-eliminates-most-overdue-fines/>
- Cook, S. (2020). Fine-free policies. Library Connection, Inc. Available:
https://libraryconnection.info/documents/fine_free_policies_report_SC-2020-07-15.pdf
- Days of the year (2024). Return borrowed books week. Available:
<https://www.daysoftheyear.com/days/return-borrowed-books-week/>
- Dixon, J. A. & Gillis, S. A. (2017, April 4). Doing fine(s)? fines & fees. Library journal. Available:
<https://www.libraryjournal.com/story/doing-fines-fines-fees>
- Fine-Free Library (2024, May 31). The free library of Philadelphia is now fine-free! Available:
<https://libwww.freelibrary.org/campaign/fine-free/>
- Gerber, A. (2022, September 28). Fine farewells: LJ's 2022 fines and fees survey. Available:
<https://www.libraryjournal.com/story/Fine-Farewells-LJs-2022-Fines-and-Fees-Survey>
- Houston Public library Homepage (2024). Library policies. Available:
<https://ko.houstonlibrary.org/policies>
- LA County Library (2024, May 25). Read in the library and reduce your fees. Available:
<https://lacountylibrary.org/readaway/>
- LA County Library (2024, May 27). We're fine free. Available:
<https://lacountylibrary.org/fine-free/>
- Los Angeles public library (2024, May 30). Fees | returning library materials. Available:
<https://www.lapl.org/about-lapl/borrower-services#loans>
- Moselle, A. (2019, December 11). Got a fine for overdue books? Philly libraries will soon forgive them. WHYY PBS. Available:
<https://whyy.org/articles/got-a-fine-for-overdue-books-philly-libraries-will-soon-forgive-them/>
- Pruitt-Young, S. (2021, October 5). The nation's largest public library system is ending late fees forever. Available:
<https://www.npr.org/2021/10/05/1043412502/library-fees-eliminated-new-york>

- Salt lake City Public Library Homepage (2024). Fine free. Available:
<https://www.urbanlibraries.org/initiatives/democracy/fine-free-map>
- Sandiego Public Library Homepage (2024). Fines & fees. Available:
<https://www.sandiego.gov/public-library/services/lending/finesfees>
- SanFrancisco Public Library (2019). Long overdue: eliminating fines on overdue materials to improve access to San Francisco Public Library. Available:
<https://sfpl.org/sites/default/files/2020-02/Fine-Free-Report011719.pdf>
- SanFrancisco Public Library Homepage (2024). Fine free library. Available:
<https://sfpl.org/about-us/fine-free-library>
- SanFrancisco Public Library Homepage (2024). What happens when an item is overdue?
Available: <https://sfpl.libanswers.com/faq/268622>
- Urban Libraries Council Homepage (2024). Fine fredd map. Available:
<https://www.urbanlibraries.org/initiatives/democracy/fine-free-map>
- Zahniser, D. (2019, December 13). L.A. Libraries will stop collecting late fees for overdue books and other materials. Los Angeles Times. Available:
<https://www.latimes.com/california/story/2019-12-13/los-angeles-libraries-end-fines-overdue-books>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American Library Children's Librarian (2021). A story about a children's librarian at the American Library. Available: <https://brunch.co.kr/@6e76b19028a4460>
- Hankook Ilbo (2022, April 7). Delinquency of library books has decreased... after eliminating late fees at the Seattle Public Library, it actually decreased. Available:
<http://m.koreatimes.com/article/20220407/1410079>
- Jeong, Sihaeng (2023, April 14). [Correspondent's Report] There are no late fees at U.S. libraries. Chosun Ilbo opinion correspondent column. Available:
https://www.chosun.com/opinion/correspondent_column/2023/04/14/IWJ3TZY6XNGDPHSQUOLYUJJCLE/
- Kang, Young-ku (2008). A survey on domestic university library lending regulations: focusing on overdue payment regulations.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Private University Libraries, (9), 89-101.

-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ibrary and Information (2009). A Study on Ways to Prevent Loan Delinquency and Improve Recovery Rates in Public Libraries. Seoul: National Library of Korea.
- LA JoongAng Ilbo (2018, July 4). Abolition of late fees at city libraries... Enhancing efficiency and encouraging use. Available:
<https://news.koreadaily.com/2018/07/03/society/generalsociety/6345678.html>
- Lee, Yong-Hun (2023a, June 5). [Field Column] Public library late fees ① Are American libraries just ignoring 'book thieves'?. library.com. Available:
<http://libns.com/View.aspx?No=2838063>
- Lee, Yong-Hun (2023b, June 14). [Field Column] Public library late fees ② Feel the joy of reading together rather than the penalty. library.com. Available:
<http://libns.com/View.aspx?No=2846929>
- Ministry of Education, Korea Education and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2021). Research on Establishing Guidelines for Disposing of University Library Collections. Daegu: Korea Education and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 Rho, K. (2019, November 6). Chicago Public Library's return rate rises after eliminating late fees. LA JoongAngIlbo. Available:
<https://news.koreadaily.com/2019/11/04/society/international/7747192.html>
- Yoon, Hee-Yoon (2020). A study on the book circulation rules of public library in Korea.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1(1), 349-372.
<http://dx.doi.org/10.16981/kliss.51.202003.349>